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방역 매뉴얼

## Contents

### 방역 매뉴얼 개요

- 1. 발간 목적 ..... 02
- 2. 적용 범위 ..... 02

### 방역계획 수립

- 1.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계획 수립 ..... 04
- 2. 전자출입명부 ..... 06
- 3. 개인위생 안내 ..... 08

### 직원 관리

- 1. 출·퇴근 관리 ..... 10
- 2. 직원 보호 및 교육 ..... 11

### 이용자 관리

- 1. 출입 관리 ..... 13
- 2. 이용자 안전 관리 ..... 14

### 시설 관리

- 1. 환기 ..... 16
- 2. 청소·소독 ..... 17
- 3. 시설 이용 ..... 21

### 환경소독제의 종류

- 1. 환경소독제란? ..... 23
- 2. 코로나19 소독용 살균·소독제 ..... 25
- 3. 환경소독제 Q&A ..... 29

### 부록

- 붙임 1.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 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 33
- 붙임 2.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 34
- 붙임 3. 코로나19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포스터) ..... 36
- 붙임 4.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포스터) ..... 37
- 붙임 5.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포스터) ..... 38
- 붙임 6.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일반소독용 살균제(30개) ..... 39
- 붙임 7. 사업장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양식(예시) ..... 40

※ 본 매뉴얼(소스 포함)의 상업적 이용(상품화, 판매행위 등)을 금합니다.

# 방역 매뉴얼 개요

## 1. 발간 목적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독의 개념과 효과, 환경소독제 종류와 유의사항, 현재까지 밝혀진 코로나19 정보를 토대로 제시하는 **올바른 소독방법** 및 **기타 소독 관련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 본 매뉴얼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 2. 적용 범위

- 집단시설** :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다중이용시설** : 학원,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영화관, 대형식당, 대중목욕탕 등

※ **의료기관 소독기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지침을 준수한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홈페이지 [ncov.mohw.go.kr](http://ncov.mohw.go.kr) ☞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참조)

※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환자 이동 동선 소독은 전문업체에 위탁한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학원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대중교통(버스·철도·지하철·택시 등)  
영화관  
대형식당  
쇼핑센터(대형마트·시장·면세점·백화점 등)  
대중목욕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방역계획  
수립



## 1. 방역관리자 지정 및 방역계획 수립

- ① 사업장이나 시설의 규모에 따라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관할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한다.



방역관리자 지정

관할 보건소  
연락망 확보

- 2 방역관리자를 중심으로 시설을 확인하고 직원, 이용자 등을 관리한다.



- ✓ 환기통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 ✓ 이용자 간에 거리두기는 잘 지켜지고 있는가
  - ✓ 손소독 시설은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가
  - ✓ 사람들의 손이 자주 닿는 공용물품은 무엇이 있는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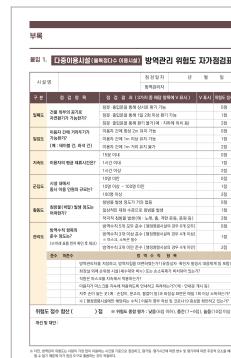
- 사무실 같은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의 방역관리에 집중한다.
  -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자들을 관리한다.

- ### 3 방역관리 평가 및 개선사항 점검

- 방역관리자는 직원들과 함께 매월 1회 이상 방역관리를 평가한다.
  -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등을 이용해 위험도를 평가한다.

☞ 부록 : 붙임 1

  - 방역관리 위험도가 중간이거나 높은 항목이 나온 경우, 위험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 코로나19 관련 안내게시물을 부착하고 손님 입장 시 명부를 작성한다.
  -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를 바탕으로 환기 방법과 주기를 설정하고, 지침대로 소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 4 코로나19 유행상자가 발생했을 때

- 밀접접촉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할 때에는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관할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한다.



5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순님들이 방역을 철저히 한다.

- 영업 시 카운터에 투명 칸막이나 비대면 기기를 설치해 손님과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 QR코드 등을 이용한 명부를 비치하고 손님들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이용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 부록:붙임 7
  - 대기자 발생 시 번호표를 활용하거나 대기자 간에 1미터 간격을 두고 대기할 수 있도록 바닥에 간격 표시 등으로 안내한다.
  - 테이블 간격을 가급적 2미터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탁자 간 거리를 두는 방법을 마련한다.
  - 임산부나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손님의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시키거나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꼭!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한다.

6 이용자가 알아 보기 쉽게 이용절차나 혼잡시간대를 알리는 안내게시물을 부착한다.

7 침방울 발생이나 전파가 가능한 행위는 자제하도록 안내한다.

## 2. 전자출입명부

###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

현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 운동(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GX류), 실내스탠딩 공연장, 물류센터, 방문판매, 대형학원(일시 수용인원 300인 이상), 학원, 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 총 13개 업종

### 전자출입명부 어플 설치하기

- 네트워크 연결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태블릿 PC 등)를 준비한다.

- 단말기에 전자출입명부(KI-PASS) 어플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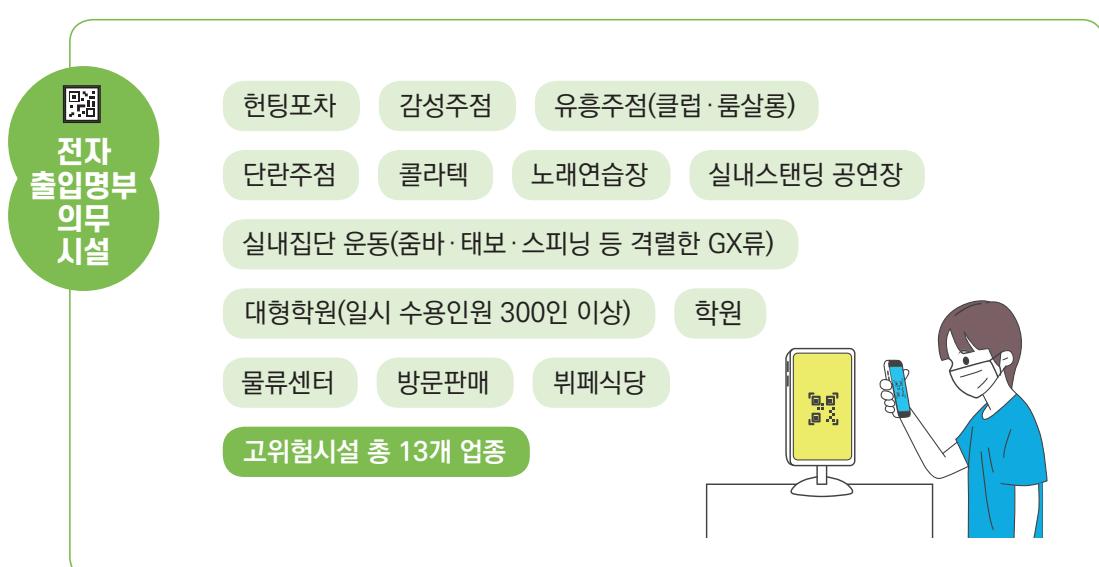


- 신규 업체로 회원등록 한다.

- QR코드 스캔 실행을 통해 출입자를 관리한다.

※ QR코드 스캔할 직원의 추가 등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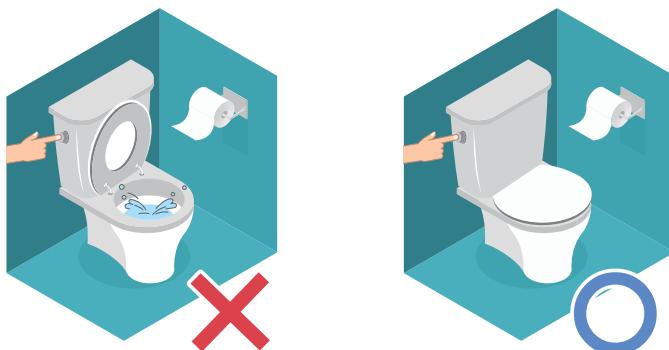
# 방역계획 수립



## 3. 개인위생 안내

- 사업장 내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홍보 안내문이나 포스터 등을 부착한다. ☞부록:붙임3  
※ 코로나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 자료 등을 활용한다.

- 변기 물을 내릴 때 에어로졸이나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변기 뚜껑을 덮고 사용하도록 화장실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한다.



- 공동물품 이용은 자제하고 일회용품, 개인물품을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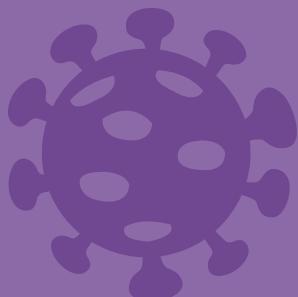
- 손소독제 비치 또는 화장실 외에 사업장 내 세면대를 설치하여 이용객이 자주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마스크 착용 등의 안내문을 게시한다. ☞부록:붙임4,붙임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직원  
관리



# 1. 출·퇴근 관리

1 매일 출근 시 직원 체온측정,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 및 기록한다.

2 일과 중, 코로나19 증상<sup>\*</sup>이 확인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한다.

-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를 관찰하도록 한다.
- 증상이 계속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이동 시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 코로나19 증상이란?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3 직원은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실시한 후 사무실에 입장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4 근무시간 중 마스크 착용을 필수화 하며, 비누(세정제)를 사용한 손씻기를 통해 개인위생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2. 직원 보호 및 교육

- 1 대면업무인 경우 이용자와 직원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한다.
- 환경에 따라 마스크 외 추가 보호구를 착용하거나, 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추가 보호 방안을 고려한다.

- 2 약수 등 신체 접촉을 금지하도록 교육한다.

- 3 직원을 상대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교육하고, 사무실 내의 마스크 착용도 안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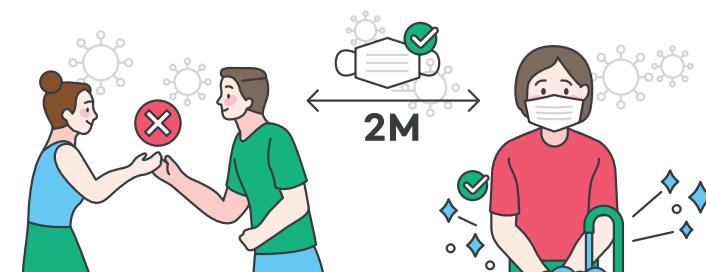
- 4 모임은 가능하면 화상·전화회의 등 비접촉 방식으로 변경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 명단·연락처를 작성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확인한다.



- 5 근무 후 회식이나 공동 식사를 금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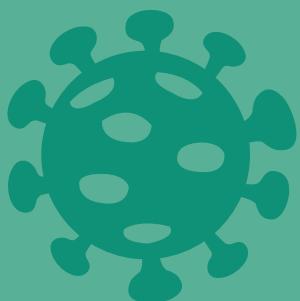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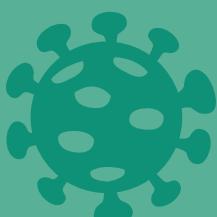
- 6 행사나 회의는 취소나 연기 또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7 코로나19 질병 정보, 개인 위생수칙·행동요령, 사회적 거리 두기 교육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 이용자 관리



# 1. 출입 관리

1 내부에 출입하는 이용자 모두 방문시간, 이름,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부(☞ 부록:불임7)를 작성한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생략할 수 있으며, 4주 보관 후 폐기한다.)

2 체온 측정을 하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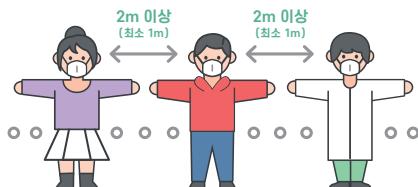
3 명부 작성 거부 또는 열이 나는 이용객 등에 대해 입장을 제한한다.



4 가급적 최소 시간(1시간 이내) 머무르기 등 안내문을 게시한다.

5 이용자 간의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입장 이용객을 조절하도록 노력한다.

- 바닥 면적 4㎡ 당 1명으로 입장 인원 허용, 총 정원의 50% 입장 인원 제한 등의 밀도 조절을 한다.



바닥 면적  
4㎡당  
1명 허용

총 정원의  
50%로  
인원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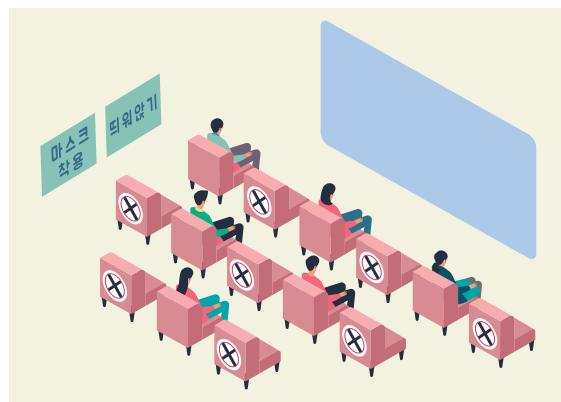
## 2. 이용자 안전 관리

- 1 방문자 간 2m(최소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 스티커로 간격 표시, 대기줄 분리, 테이블 간격 유지 등의 방안을 활용한다.



- 2 물리적인 간격 확보가 어려운 경우, 투명 칸막이 설치, 이용객 수 제한, 이용객 간 시간 간격 유지 등을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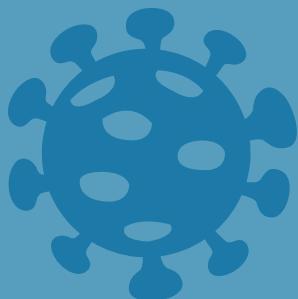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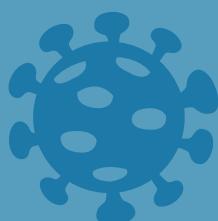


- 3 이용객이 집중될 수 있는 이벤트성 행사는 자제하고, 이용객의 입·퇴장과 이동이 분산되도록 유도한다.

- 4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거나 혼잡시간을 알려 이용시간을 분산하도록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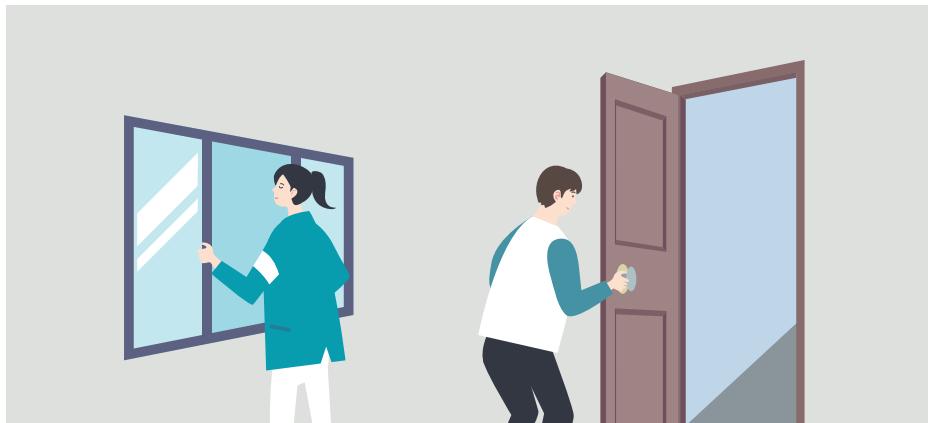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시설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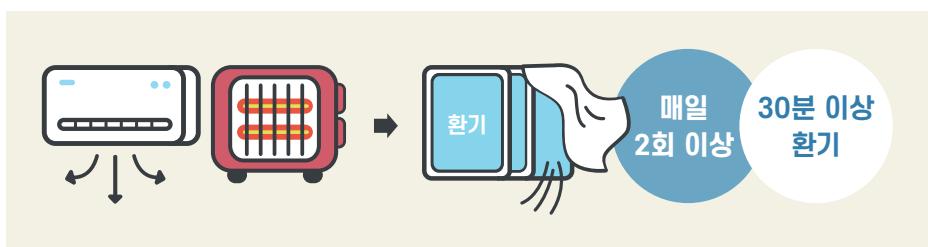
# 1. 환기

- 1 자연 환기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 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어 공기 중의 오염원이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 2 창문 등을 계속 열지 못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 출입문을 (매일 2회 이상 / 30분 이상) 열어 환기를 시킨다.

- 3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여름 / 겨울철에도 매일 2회 이상, 30분 이상 환기를 시킨다.



- 4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 온도설정은 낮게 풍속도 낮게 유지하면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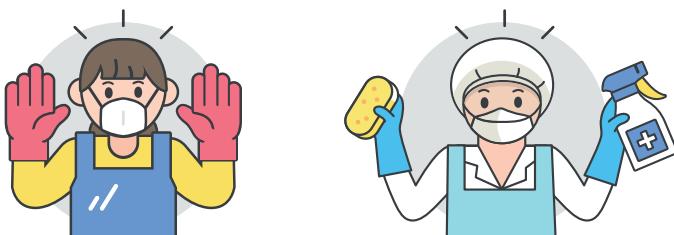
## 2. 청소 · 소독

1

청소 · 소독을 시작 전, 환기를 위해 창문과 문을 열어 둔다.

2

청소 · 소독을 시작 전, 방수성 장갑,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소독 전, 표면이 이물질로 오염된 경우 소독제의 효과가 감소될 수 있으므로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한다.

※ 세제(또는 비누)와 물을 사용하여 청소하면

표면과 물체에 있는 감염성 병원체가 불활성화 되지는 않으나 병원체 수가 감소하여 감염 노출을 감소시킨다.

※ 청소 후 소독을 하면 표면에 남아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 노출이 더욱 감소한다.



4

소독제 준비 : 환경부 승인 · 신고 소독제(☞ 부록 : 복임 6)를 선택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희석한다.

## 소독제 준비 : 희석액 만드는 방법

- 5% 차아염소산나트륨 원액을 사용하여 0.1%(1,0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을 만드는 경우



### 가정용 락스로 소독할 때 주의사항

- 희석액을 만들 때는 반드시 찬물에 희석한다.
- 가스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다른 세제나 소독제와 혼합하지 마세요.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를 손상시키거나 냄새로 인해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창문을 개방하고 사용한다.
-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유효 염소 농도	차아염소산나트륨 최종 농도(%)	차아염소산나트륨 : 물 혼합 배율	
		4% (40,000ppm) 원액	5% (50,000ppm) 원액
500 ppm	0.05%	1 : 80	1 : 100
1,000 ppm	0.1%	1 : 40	1 : 50
5,000 ppm	0.5%	1 : 8	1 : 10

### 참고

- 금속 표면은 알코올(70% 에탄올)을 이용하여 소독한다.

\* 가정용 락스에 손상될 수 있는 물건은 70% 이상 에탄올을 함유한 알코올을 사용한다.

이미지 출처 : 질병관리청

5

소독제로 천(헝겊이나 타올 등)을 적신 후 손이 자주 닿는 곳(출입구 손잡이, 탁자, 공용PC, 스위치 등)을 닦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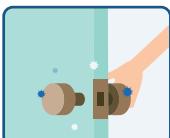
### 건물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는 더 자주 청소 및 소독해주세요!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를 충분히 적신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합니다.**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감염원 에어로졸 발생, 흡입위험 증가 및 소독제와 표면의 접촉범위가 불분명하여 소독효과가 미흡하므로 **꼭 닦아서** 소독해주세요!

###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해주세요!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엘리베이터 버튼,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장치 등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물건의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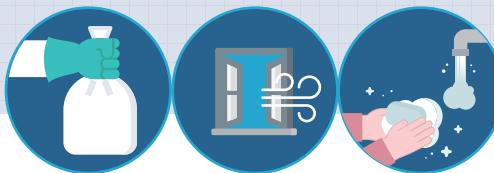
화장실: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욕조, 화장실 표면 등

이미지 출처 : 질병관리청

## 시설 관리

- 6 일정 시간(소독제에 따라 다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에 적신 천(헝겊이나 타올 등)으로 표면을 닦는다. (☞ 본서 25페이지 <코로나19 소독용 살균·소독제> 참고)
- 7 하루 1회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접촉이 빈번한 공용사용 장소의 표면은 더 자주 소독한다.
- 8 화장실 : 소독제를 사용해 변기를 포함하여 손길이 닿는 표면을 소독제로 닦는다.  
- 변기 내부를 청소한 솔은 변기 외부 소독에 중복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9 소독업무 종료 시 일회용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밀봉해 버리고, 재사용 가능한 도구는 소독한 후 건조 보관한다.  
- 청소도구 소독 :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1000ppm)에 30분 이상 침적한다.

### 여기서 잠깐! 청소 및 소독이 끝났다면?



- ✓ 소독 후 발생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밀봉해서 버려주세요!
- ✓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해주세요!
- ✓ 소독 후 손씻기, 샤워 등 개인위생을 꼭 실천해주세요!

이미지 출처 : 질병관리청

- 10 소독 후 사용 전까지 충분히 환기한다.

- 11 소독 후 소독한 날짜, 범위 등 소독일지를 작성한다.

### 3. 시설 이용

1

구내식당은 이용 시간을 분산해 운영하거나 좌석 간 간격 두기, 칸막이 설치, 지그재그형 배열 등으로 직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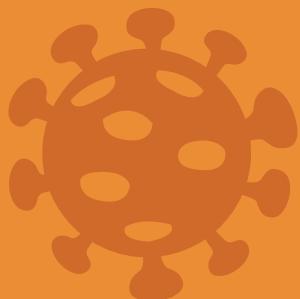


2

배식·퇴식 시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도록 간격을 유지한다.  
(스티커 등으로 간격 표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 환경 소독제



# 1. 환경소독제란?

1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환경부 소관이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승인 제품**(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및 **신고 제품**(일반 살균제) 품목으로 관리한다.

2

**환경부 승인제품(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소독업자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해야 한다.
- 반드시 용법·용량, 개인보호구 착용 및 주의사항 준수가 필요하다.



3

**환경부 신고제품(일반 살균제)**

-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 **가정, 사무실 내 자가소독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전문소독업자의 방역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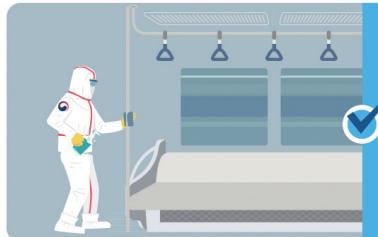
유효성분을 유효농도로 함유한 신고제품과 감염병예방 및 방역용으로 승인된 제품 모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



### 코로나19 살균·소독제 보다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



가정, 사무실 등에서  
자가소독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신고된  
살균제(락스, 에탄올 70% 제품 등)  
제품 권장



방역용 소독제는 환경부에 승인된  
감염병 예방용, 방역용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

코로나19 소독용 제품에는 가정용, 방역용 등 여러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신고·승인제품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효성분을 유효농도로 함유한  
신고제품(락스 등)과 감염병예방 및  
방역용으로 승인된 제품 모두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  
신고 및 승인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http://ecolife.me.go.kr)) 홈페이지 내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목록을 참고하세요.

이미지 출처 : 질병관리청

## 2. 코로나19 소독용 살균·소독제

### ▣ 코로나19 소독용 살균·소독제의 유효 성분 및 유효 농도

분류	대표 유효 성분 [ 참고문헌 ]	유효 농도	표면 접촉 시간	적용 대상	
염소 화합물	차아염소산나트륨 [①②③④]	0.05% (500 ppm)	5분 이상 (ECDC 참고)	● 일상 표면소독	
		0.1% (1,000 ppm)	1분 이상 (WHO 참고)	● 일상 화장실 소독 ● 환자이용공간 표면 및 화장실 소독	
		0.5% (5,000 ppm)		● 환자 혈액 및 체액 소독	
알코올	에탄올 [②③④]	70% ~ 90%	1분	●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이소프로판올 [③④]	50%			
4급 암모늄 화합물	벤잘코늄염화물 [①③④]	0.05% ~ 0.5%	10분 이상	● 일상 및 환자이용공간 표면소독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④]	0.5%	5분 이상		
	과아세트산 [⑤]	0.26%			
페놀 화합물	클로록실레놀 [④]	0.12%	30초 이상		

#### 참고 문헌

- ① 질병관리본부, 2020. 2020년 호흡기감염병 관리지침(성홍열, 레지오넬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 ② WHO, 2020.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during health care when novel coronavirus infection is suspected
- ③ ECDC, 2020. Interim guidance for environmental cleansing in non-healthcare facilities exposed to 2019-nCoV
- ④ NEA, 2020. Interim list of household products and active ingredients for disinfection of the COVID-19 virus
- ⑤ Abreu. A. C. et al., 2013. Current and emergent strategies for disinfection of hospital environments. J. Antimicrobial Chemotherapy, 68, 2718–2732.

## ▣ 살균·소독제 유효 성분별 특징 ⑥

분류	대표 유효 성분	유효 성분별 특징
염소계 화합물 (차아염소산류)	- 차아염소산 나트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 및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li> <li>● 흡입에 의한 독성이 있으므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소독할 것</li> <li>● 락스 등은 산성세정제나 합성세제와 혼합하여 사용 시, 유해가스 발생</li> <li>● 강산과 격렬히 반응하여 유독가스를 발생할 수 있음</li> <li>● 섬유 변색 및 금속 표면 손상에 주의할 것</li> <li>● 희석된 차아염소산은 효과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직전에 희석해서 사용할 것</li> </ul>
알코올	- 에탄올 - 이소프로판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 및 눈과 점막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li> <li>● 화재의 우려가 있어 넓은 부위의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음</li> <li>● 고농도 알코올 증기 흡입 시, 호흡기 자극 유발하여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음</li> <li>● 강산화제와 격렬히 반응할 수 있음</li> <li>● <b>에탄올 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화기를 사용 중인 실내에서는 사용을 피하고, 사용 후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b></li> <li>● 빠르게 휘발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짧은 시간 처리해야 하는 소독에 적합</li> <li>● 플라스틱, 또는 고무 재질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접착제 등을 녹일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li> </ul>
4급 암모늄 화합물	- 벤잘코늄 염화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적으로 접촉 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li> <li>● 흡입으로 인한 호흡 곤란 등 급성 독성을 일으킬 수 있음</li> <li>● 주로 무색 또는 미황색의 투명한 액체로 특이한 냄새가 있음</li> <li>● 다른 소독제 성분(알콜 등)과 함께 혼합된 경우 더 낮은 농도에서도 소독효과를 나타냄<sup>⑦</sup></li> <li>● 이 성분은 유기물, 양이온 계면활성제 등에 의해 쉽게 비활성화 되므로 소독하고자 하는 표면을 깨끗이 닦은 후 소독할 것</li> </ul>
과산화물	- 과산화수소 - 과아세트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농도의 과산화수소는 피부와 눈에 화학적 화상을 일으킬 수 있음</li> <li>● 과산화수소 소독제는 락스 등 염소계 표백제나 다른 세정제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함</li> <li>● 반응성이 크고 폭발성이 있어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며 위험한 물질과는 떨어뜨려 보관해야 함</li> <li>● 주로 무색 투명한 액체로서 냄새가 거의 없거나(과산화수소), 강한 식초 냄새(과아세트산)가 있음</li> <li>● 희석 후 빨리 효과가 떨어지므로 사용 직전 희석해서 사용할 것</li> <li>● 금속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li> </ul>
페놀 화합물	- 클로록실레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부와 눈에 자극과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li> <li>● 주로 옅은 황색의 액체로 약간의 특이적 냄새가 있음</li> </ul>

# 환경소독제

## 참고 문헌

- ⑥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ranch, Labour Department, 2007. Chemical Safety in the Workplace: Guidance notes on safe use of chemical disinfectants.
- ⑦ Manfred H. Wolff et al., 2005. Environmental survival and microbicide inactivation of coronavirus, Coronavirus with Special Emphasis on First Insights Concerning SARS, 201–212

## ▣ 유효 성분별 소독제 종류

염소계 화합물 (차아염소산류)	알코올	4급 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 화합물

※ 환경부 신고제품 중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을 참고했습니다.

## ▣ 용도별 승인 · 허가

사용 용도	관할 부처	세부 내용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옥실, 세탁용 등 자가소독용 살균제	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	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 · 소독제	식약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



# 환경소독제

## ▣ 신고대상 환경소독제 확인 방법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으로 신고된 제품**으로 <코로나19 소독용 살균·소독제의 유효 성분 및 유효 농도>의 유효농도 기준을 충족(☞ 본서 25p 참조)하는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살균제로 사용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a search result for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19년~)'. It includes a QR code, product details like '제품명: 코프도크 페퍼스 스트로이어 체리필아민', '유통처: 코프도크(주)', and '유통일자: 2018-07-27'. A red box highlights the search bar with the number '4' and the text '검색어'.

Below the search result, there is a table of products:

번호	제품명	품목	업체명
50772	코프도크 페퍼스 스트로이어 체리필아민	탈취제	코프도크(주)/직영판권
50771	코프도크 품질제어부스 흐름제어, 글린코스	탈취제	코프도크(주)/직영판권
50770	코프도크 품질제어부스 흐름제어, 베이비워터	탈취제	코프도크(주)/직영판권
50769	코프도크 품질제어부스 흐름제어, 글린코스	탈취제	코프도크(주)/직영판권
50768	코프도크 페퍼스 스트로이어 체리필아민	탈취제	코프도크(주)/직영판권



◀ 초록누리 홈페이지 <http://ecolife.me.go.kr/ecolife/>

- ① 화학제품 → ②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이력 → ③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19년~, 환경부) → ④ 검색어 입력 → ⑤ 신고 정보 확인

2

환경부 신고제품목록에 없는 살균제라도 자가검사번호가 있는 제품 중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성분별 유효농도>를 충족하는 경우(☞ 본서 25p 참조), 사용 가능하며 초록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screenshot shows a search result for '위해우려제품 (-18년)'. It includes a QR code, product details like '제품명: IRON REMOVER AND WHEEL CLEANER', '유통처: 주식회사 리모브아이너무제일', and '유통일자: 2018-07-21'. A red box highlights the search bar with the number '4' and the text '검색어'.

Below the search result, there is a table of products:

번호	제품명	품목	업체명
33318	IRON REMOVER AND WHEEL CLEANER	세정제	주식회사 리모브아이너무제일
33317	글라스드라이버	세정제	제이케이제이제이
33316	안티파크리너	세정제	남주설립
33315	안티파크 탈취제	탈취제	89파ックス
33314	차량용클린터너	세정제	삼우실업



◀ 초록누리 홈페이지 <http://ecolife.me.go.kr/ecolife/>

- ① 화학제품 → ②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이력 → ③ 위해우려제품(-18년 관리제품) → ④ 검색어 입력 → ⑤ 신고 정보 확인

## 3. 환경소독제 Q & A

Q1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회사나 다중이용시설은 소독을 위해 얼마나 오래 폐쇄해야 하나요? 다른 직원들이 복귀해 근무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 건물전체 폐쇄나 자가격리에 관한 범위는 방역당국이나 시·도 역학조사관이 설정해준다.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회사에 다녀갔다고 해서 회사 건물 전체를 반드시 폐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확진환자의 동선을 파악하여 소독 범위를 결정하고 사용이 확인된 회사 내 공간은 소독을 위해 공간을 비워야(일시적인 폐쇄) 한다.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경우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여 폐쇄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한다.
- 소독을 위해 폐쇄된 공간에 어린이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부 문과 창문을 최대한 열고 환풍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환기시킨다.
- 해당 구역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 후,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기를 결정한다.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한 적이 없는 직원들은 소독 완료 후 즉시 근무를 재개할 수 있다.
- 소독한 후,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소독 대상 공간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개방 시기를 결정하는데,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소독제로 사용한 경우, 냄새나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소독 후 환기를 다음날까지 하고 그 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Q2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교나 공원, 실외 놀이터를 청소하고 소독해야 하나요?

-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
-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위해할 수 있다.
-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
- 실외 지역은 일반적으로 일상 청소가 필요하며 소독은 필요하지 않는다. 실외 지역에 대한 기존 청소 및 위생 관행을 유지해야 한다.

## 환경소독제

Q3

커튼, 카펫, 베개와 같은 실내 직물 물품(다공성)을 소독해야 하나요?

- 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이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섬유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한다.
- 세탁기 사용이 가능한 침대 시트, 베개 덮개, 담요, 커튼 등 세탁 가능 직물은 세제나 소독제를 사용하여 세탁기로 세탁한다.



- 온수 세탁의 경우 일반세제를 넣고 70°C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한다.
- 저온(즉, 70°C 미만) 세탁의 경우 저온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sup>①</sup>를 선택하며, 세탁기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① 환경부에서 세탁용 소독제로 승인한 제품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고온에서 세탁할 경우, 위해가스 발생 및 옷감 손상 등의 우려가 있어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60°C 이하에서 세탁한다.**

- 세탁이 어려운 카펫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세탁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물과 세탁용 소독제를 사용하여 제조사 설명서에 따라 손세탁한다.
- 세탁하고 완전히 말린다.(건조기가 있는 경우, 80°C에서 2시간 동안 건조할 것을 권장)
- 직물에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면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는 에어로졸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Q4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도 소독해야 하나요?

- 일반적으로 가정환경에서 장난감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물품은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건조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건, 특히 어린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물건에는 삼키면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소독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소독을 꼭 해야만 하는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다.



## Q5

### 인체에 무해한 살균·소독제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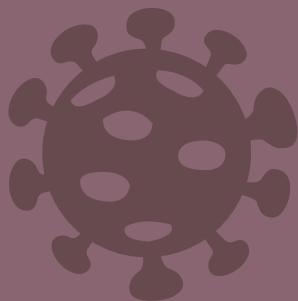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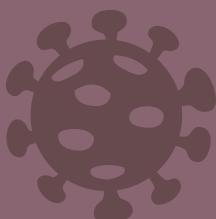
-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다.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진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 특히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환경에 노출되는 양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sup>②③</sup>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②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옥실, 세탁용 등 자가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 등 용도별 승인·허가 여부 확인

③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 홈페이지([ecolife.me.go.kr](http://ecolife.me.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부록



## 불임 1. **다중이용시설(불특정다수 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점검표**

시설명		점검일자	년 월 일			
		방역관리자				
구 분	점 검 항 목	점 검 결 과 (3가지 중 해당 항목에 V 표시)	V 표시	위험도 점수		
밀폐도	건물 외부의 공기로 자연환기가 가능한가?	창문·출입문을 통해 상시로 환기 가능		0점		
		창문·출입문을 통해 1일 2회 이상 환기 가능		1점		
		창문·출입문을 통해 환기 불가(예: 지하에 위치 등)		2점		
밀집도	이용자 간에 거리두기가 가능한가? (예: 테이블 간, 좌석 간)	이용자 간에 항상 2m 유지 가능		0점		
		이용자 간에 1m 이상 유지 가능		1점		
		이용자 간에 1m 거리 유지 불가		2점		
지속도	이용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15분 이내		0점		
		1시간 이내		1점		
		1시간 이상		2점		
군집도	시설 내에서 동시 이용 인원의 규모는?	10명 미만		0점		
		10명 이상 ~ 100명 미만		1점		
		100명 이상		2점		
활동도	침방울(비말)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울 발생 정도가 거의 없음		0점		
		일상적인 대화 수준으로 침방울 발생		1점		
		적극적 침방울 발생(예: 노래, 춤, 격한 운동, 응원 등)		2점		
관리도	방역수칙 항목의 준수 정도는? (※아래 표를 먼저 확인 후 체크)	방역수칙 5개 모두 준수 [행정명령시설의 경우 6개 모두]		0점		
		방역수칙 3개 이상 준수 [행정명령시설의 경우 4개 이상] ※ 마스크, 소독은 필수		1점		
		방역수칙 3개 미만 준수 [행정명령시설의 경우 4개 미만]		2점		
		준수	미준수	방 역 수 칙 항 목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지침을 마련하였는가?(유증상자·확진자 발생시 대응체계 등 포함)		
		화장실 외에 손위생 시설(세면대와 비누) 또는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가?				
		직원은 마스크를 지속해서 착용하는가?				
		이용자가 마스크를 지속해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독려하는가?(예: 안내문 게시 등)				
		자주 손이 닿는 곳(예: 손잡이, 문고리, 팔걸이 등)과 화장실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가?				
		※ [행정명령시설에만 해당되는 수칙] 이용자 명부 작성 및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하고 있는가?				
위험도 점수 합산 ( ) 점		※ 위험도 종합 평가 : 낮음(6점 이하), 중간(7~9점), 높음(10점 이상)				
개선 및 대안 :						

※ 다만, 방역관리 위험도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평가일·평가시간에 따른 변수 및 평가자에 따른 주관적 요소를 배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가 점검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불임 2.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위험도 개선방법

구 분	점 검 항 목	개 선 안
밀폐도	공간 내 환기는 가능한가? (공기 중 침방을 농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li> </ul> <p>① 야외시설 이용(특히, 침방을 발생 행위 시) 유도 및 우선 배치</p>
밀집도	이용자 간에 1m ~ 2m 거리 유지가 가능한가? (사람 간의 거리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 안내문 부착</li> </ul> <p>① 비대면 접수(무인 주문·계산기)를 하거나, 대면 접수·계산 시에는 물리적 장벽(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p> <p>② 테이블의 간격을 2m 이상으로 배정 또는 좌석 1칸을 띄어 앉도록 하기</p> <p>③ 대기하는 줄, 흡연실 등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에 2m 간격을 표시하고, 한 방향으로 이동 안내</p> <p>④ 바닥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p> <p>⑤ 그 외 테이블 칸막이 설치 등</p>
지속도	이용자의 평균 체류시간은 어떠한가? (이용자의 체류시간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 이용 절차 안내문 부착(신속한 이용 유도)</li> </ul> <p>① 사전 예약제 운영</p> <p>② 드라이브 스루를 통한 포장, 배달·포장 등 활용</p> <p>③ 시간대별 입·퇴장을 제한하거나, 입장 후 1시간 알림 등</p>
군집도	공간 내의 평균 동시 이용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평균 동시 이용 인원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 혼잡 시간대를 알리고 피하도록 안내문을 부착 (출입문, SNS 등)</li> </ul> <p>① 이용 시간대 분산 유도 (혼잡하지 않은 시간대를 이용한 기획 행사 등)</p> <p>② 이용 인원 수를 제한 (바닥면적 4㎡당 1명, 이용 인원 50%제한 등)</p>
활동도	이용자·직원의 침방을 발생 정도는 어떠한가? (침방을 발생 행위 줄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 침방을 발생 및 전파 가능한 행위 자제</li> </ul> <p>※ 혼자 또는 함께 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응원, 춤추기, 격한 운동, 식사 시 공용 그릇 사용 등</p> <p>※ 기침예절 안내(기침 또는 재채기 시에 휴지를 사용하거나 옷소매로 가리고 한 뒤 손소독)</p> <p>① 음식물 섭취 제한(공연장, 영화관, 스포츠 관람, pc방 등)</p> <p>② 식사할 때 공용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개별 식기와 집기를 사용</p>

구 분	점 검 항 목	개 선 안
관리도 (방역 수칙 준수 정도)	방역관리자 지정 및 활동 (관리의 효율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 :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위험도를 평가 및 개선활동, 이용자·직원들의 방역 수칙 준수 등 관리</li> </ul>
	손 위생 시설 비치 (손 위생 통한 감염전파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 : 손 씻기 안내문 부착(출입문, 이용 공간 등)</li> </ul> <p>① 이용자 대면 시, 손소독제 제공 및 손소독 안내            ※ 예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점의 경우 : 출입 시 또는 메뉴판 제공 시에 손소독제를 제공하여 손소독 권고</li> <li>- 택시의 경우 : 탑승자가 탑승 시에 손소독제를 제공하여 손소독 권고</li> </ul>           ② 화장실에 비누, 손세정제 등 비치</p>
	직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마스크를 착용하여 침방울이 튀는 것을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 : 전직원 마스크 착용 및 기본 수칙 교육, 안내문 부착</li> </ul> <p>※ 코로나19는 침방울이 틈으로 인해 전염되는 특징이 있음을 부착</p> <p>①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p>
	자주 손이 닿는 표면, 화장실 등 환경 소독 (환경 소독을 통한 감염 전파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 : 소독 및 방역 수칙 교육 및 안내</li> </ul> <p>① 손이 자주 닿는 곳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실시            ※ 손이 자주 닿는 곳 :            문손잡이, 메뉴판, 탁자, 의자, 리모컨,            화장실 세면대 손잡이, 공용 물건, 무인계산기 표면,            승강기 버튼, 계단 손잡이 등</p> <p>② 소독하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 분리하여 손이 닿지 않도록 하기</p>
	[ 행정명령시설인 경우만 해당] 명부 작성 및 증상 확인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필수 : 직원 및 이용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정확한 명부 작성 또는 QR 코드 등 이용하여 관리</li> </ul> <p>※ 호흡기 증상 :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p>

### 불임 3. 코로나19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포스터)

출처 : 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  
KCDC나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해외감염병  
**NOW**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ncov.mohw.go.kr)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25

## 붙임 4.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포스터)

출처 : 질병관리청



1339  
질병관리본부 쿨센터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

## 불임 5.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포스터)

출처 : 질병관리청

발행일 : 2020.2.27.



### 코로나1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병 예방할 수 있습니다”

- ①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② 마스크로 입·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 ③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 ④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⑤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 접이형 제품 착용법



마스크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주세요



양 손가락으로 코핀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 컵형 제품 착용법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코와 농을 깊짜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양 손가락으로 코핀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 불임 6.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일반소독용 살균제(30개)

	살균제 제품명	자가검사번호 / 신고번호	업체정보		유효성분	
			업체명	전화번호	성분명	함량(%)
1	유한락스 파워젤	FB19-01-0110	(주)유한크로락스	031-352-8292	차아염소산 나트륨	1.5
2	아주 깨끗한 락스	FA19-04-0029	(주)지엔에스	054-336-3262		4.0
3	GB락스	F-B01B-B00010002-A170	그린풀	055-328-9533		5.0
4	생활공작소 락스	F-B01B-B00010002-A170	그린풀	055-328-9533		5.0
5	락스세제 13L/2L/1L/750ML	E-B01B-B00010001-A180	맑은나라	051-292-0666		3.0
6	맑은 락스 13L/2L/1L	E-B01B-B00010001-A180	맑은나라	051-292-0666		5.0
7	깨끗한 락스	C-B01A-J00040006-A180	상원상공(주)	031-677-2517		5.2
8	깨끗한 향락스	C-B01B-J00040001-A180	상원상공(주)	031-677-2517		4.8
9	백광락스	C-B01A-J00040004-A180	상원상공(주)	031-677-2517		5.2
10	심플러스락스	C-B01A-J00040005-A180	상원상공(주)	031-677-2517		5.2
11	노브랜드 깨끗한 향락스	C-B01A-J00040006-A180	상원상공(주)	031-677-2517		4.1
12	별미락스	G-B01B-H003001-A160	선진바이오(주)	02-2688-7698		4.5
13	선진향락스	G-B01B-H003004-A160	선진바이오(주)	02-2688-7698		4.8
14	유한락스 레귤러	F-B01B-H00010007-A180	유한크로락스	02-716-2853		6.0
15	유한락스 후레쉬	F-B01B-H00010001-A151	유한크로락스	02-716-2853		6.0
16	유한락스 후로랄	F-B01B-H00010002-A151	유한크로락스	02-716-2853		6.0
17	레몬락스	F-B01A-H00040003-A151	(주)산도깨비	070-4814-0191		4.5
18	향락스(산도깨비)	F-B01A-H00040003-A151	(주)산도깨비	070-4814-0191		4.5
19	홈워시 락스	D-B01A-H00010005-A180	(주)신희	031-791-6611		5.0
20	수퍼락스	C-B01A-H006001-A150	(주)에코트리	070-4150-9005		5.0
21	홈스타 천연 소금으로 만든 향락스	F-B01A-A00010001-A15	(주)엘지생활건강			5.4
22	향락스(푸른들)	C-B01A-H00020001-A151	(주)푸른들	031-356-7477		4.0
23	한샘락스	C-B01B-L001001-A160	(주)한샘생활건강	054-336-5700		4.0
24	크린유니락스	D-B01A-H00130001-A190	지피지피	070-7732-5648		4.0
25	크린유니향락스	D-B01A-H00130001-A190	지피지피	070-7732-5648		4.0
26	디노보 살균소독 100도씨	EB20-12-0280	(주)디노보	070-7356-8460	에탄올	75.0
27	닥터살균플러스	EB19-01-0308	(주)엔비인터내셔널 코리아	070-7370-0599		70.1
28	에코하이진 후레쉬	GB19-21-0066	(주)크린피스	031-667-6735	4급 암모늄 화합물 (염화벤질 디메틸도데실암모늄)	0.1
29	바이러스탄-A	C-B01B-L00030001-A170	오리온신물질	02-466-3738	과산화물 (과아세트산)	14.8
30	나노클리너 울트라	CB19-21-0056	(주)씨엔지세븐	02-443-9627	페놀화합물 (클로록실레놀)	0.2

- 위 살균소독제는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일반소독용 살균제에 해당하는 제품들 중 본 매뉴얼의 소독방법에 적합하고, 구매가 비교적 쉬운 제품들로 정리한 것이다.
- 코로나19 자가소독용 환경부 신고제품 중 일반소독용 살균제, 화장실용 살균제, 섬유세탁용 살균제, 주방용 살균제, 기타 살균제 등의 자세한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me.go.kr](http://ecolife.me.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부록

## 불임 7. 사업장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기록양식(예시)

- 발열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 코로나19 증상을 밖문객이 직접 기록(예: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흉간·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방역 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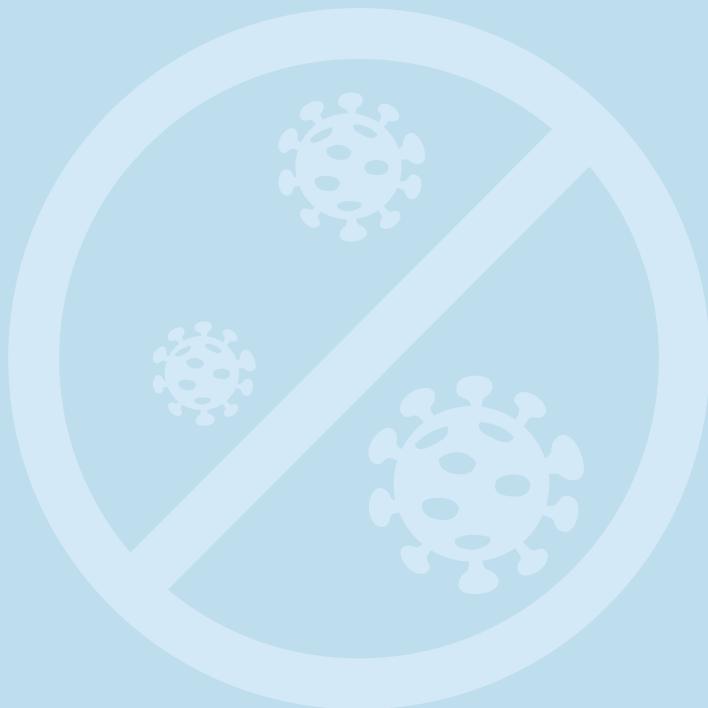
---

발 행 일 2020년 11월 1일  
발 행 처 도시마을협동조합  
주 소 07806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2로 35, 316호(마곡동)  
문 의 처 전화 02-6347-0401 팩스 02-6499-5459  
홈페이지 [www.ctcoop.kr](http://www.ctcoop.kr)  
디 자 인 디자인 이인(T.02-2273-2254)

---

검 토 질병관리청  
감 수 국립암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열  
국립암센터 감염관리실 이진홍  
가천대학교 간호대학 외래교수 유소연

---



도시마을 협동조합  
CITY TOWN COOPERATIVE

07806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2로 35, 316호(마곡동)  
Tel. 02-6347-0401 Fax. 02-6499-5459 [www.ctcoop.kr](http://www.ctcoop.kr)

이 책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마을기업 의 지원으로 기획·제작되었습니다.